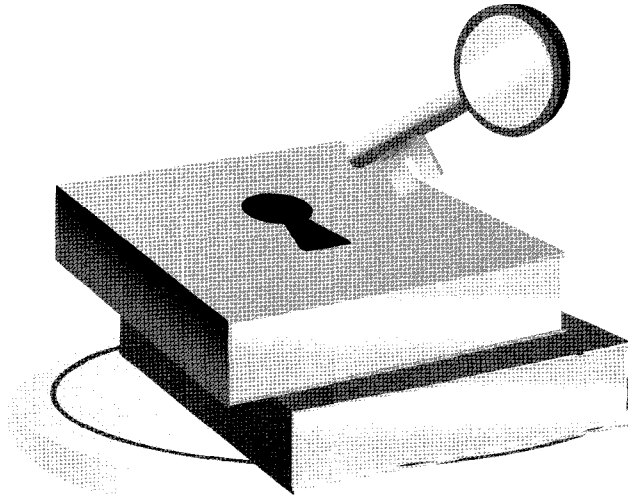
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기준 변경 -

국토해양부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게재한다.



1. 개정이유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9436호, 2009. 2. 6. 공포, 8. 7. 시행)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

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유소·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(안 제7조)
- 1) 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거리산정 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주유소 등이 집단취락 등으로 개발제



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외곽에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함.

- 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 등의 설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.
- 3) 지역여건과 이미 설치된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배치기준에 따라 주유소 등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됨.

국토해양부령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별표 1 제5호파목다)”를 “영 별표 1 제5호마목10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,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(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)으로 할 것

2의2.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가. 시·군·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·군·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. 다만, 각각의 시·군·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.

나.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. 다만,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,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7조(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) 영 별 표 1 제5호파목다)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(이하 "배치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주유소 간의 간격(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 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. 이하 이 호에 서 같다)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 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,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. 다만, 시·군· 구 행정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· 군·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7조(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) 영 별 표 1 제5호마목10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 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, 자동차 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(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 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 로거리만을 합산한다)으로 할 것</p> <p>2의2.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 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.</p> <p>가. 시·군·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· 군·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 간. 다만, 각각의 시·군·구에 대하여 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나.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 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 화석유가스 충전소 간. 다만,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, 그 밖에 개발제 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 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p>